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97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기간 연장(최은석의원안)	3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97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8. 5.
- (3) 회 부 일 : 2025. 8.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이나 추가납부의 분납 기간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기간 연장(최은석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안 제137조제4항) ☐ 분납대상 :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 ☐ 분납기간 : <u>2월~4월분</u> 의 근로소득 지급시	☐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기간 연장 ☐ 분납대상 : (현행과 같음) ☐ 분납기간 : <u>2월~7월분</u> 의 근로소득 지급시 ☐ 시행일: 2026. 1. 1.

* 최은석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5)

☐ 개정안은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6개월 동안 이를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제137조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

- 1)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월분부터 7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6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추가 세액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임.

□ 연말정산제도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할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제도임. 연말정산제도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의 배제 등과 같은 납세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징세비의 절감과 세무행정의 간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자가 2~4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수 있음. 특히 근로소득자는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납부세액의 납부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상당 규모의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소비위축을 초래하여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분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납부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계의 유동성 위험을 완화할 수 있고, 근로자의 급격한 가처분소득 감소를 방지하여 소비지출의 평탄화를 통한 경기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003년 기준 추가납부 대상자는 354만 4,553명이고, 추가납부금액 총액은 4조 90억 5,900만원으로 추가납부대상자 1인당 평균 113만원 수준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함. 평균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 3개월 분납(월별 37만 7천원)에 비해 개정안의 6개월 분납(월별 18만 3천원)은 가계의 월별 체감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다만, 분납대상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액의 국고 수납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현금흐름이 지연되고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국고금 일시차입 소요가 확대되는 등 재정 운용상 부담이 증가하게 됨. 또한, 분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세정당국의 행정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의 수혜는 고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총 355만 4,453명이며, 추가납부세액 총액은 4조 90억 5,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추가납부세액은 113만원 수준임. 그런데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평균 추가납부세액은 28만 6천원 수준인데 비해, 총급여 8,000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평균 추가납부세액은 421만원 수준으로, 추가납부세액의 장기분납을 허용할 경우 수혜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추가납부 세액 내역(2023년)]

총급여		인원(명)	추가납부액 총액(백만원)	1인당 추가납부액 (백만원)
	1천만 이하	3	1	0.33
	1.5천만 이하	32,821	387	0.01
	2천만 이하	167,060	8,636	0.05
	3천만 이하	713,247	79,633	0.11
	4천만 이하	635,367	176,743	0.28
	(4천만원 이하 소계)	1548498	265400	0.17
	4.5천만 이하	287,353	124,293	0.43
	5천만 이하	243,494	127,014	0.52
	6천만 이하	362,773	238,146	0.68
	8천만 이하	418,955	377,483	0.91
	(4천만원~8천만원 소계)	1,312,575	866,936	0.66
	1억 이하	268,152	364,908	1.36
	2억 이하	346,611	1,094,654	3.16
	3억 이하	42,184	468,588	11.11
	5억 이하	17,744	358,498	20.20
	10억 이하	6,488	267,989	41.31
	10억 초과	2,301	322,086	139.98
	(8천만원 이상 소계)	683,480	2,876,723	4.21
계		3,544,553	4,009,059	1.13

자료:TASIS 국세통계포털 4-2-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Ⅱ

문 의 처

02)6788-5149